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28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 · 지원 방안 마련	2
2.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2024. 7. 11.
3. 회부연월일: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② (생략) <u><신설></u>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등 개정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해당 사건의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규정되었음.

[표 1] 교육감 의견제출 관련 법률 개정내용

법률조항	개정일	개정내용
교원지위법 제17조	2023.9.27.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2023.12.2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제1항	2023.12.26.	사법경찰관은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의견 제시에 참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제2항	2023.12.26.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자료: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중 해당 조항 정리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를 수행하였음에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보다 두터운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교원지위법」은 제21조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¹⁾ 제22조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

교원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제도와 비교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교원지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필요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법률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교원지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교원지위법」 관련 조문이 개정안의 내용을 포섭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동법 내 다른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제17조제3항의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은 교원지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아동학대 신고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제17조의제4항에 고소·고발된 교원이 실질적·즉각적으로 법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7조제3항에서 ‘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표현은 동일 문장 내 ‘법률적 보호·지원’과 내용이 중복되고, 용어 해석 시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제17조제2항에 ‘제2항에 따른 보호 대상 기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 신고 교사 중 교육감 의견서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2.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개정안은 교육감 의견제출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2(교육활동보호조사관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둔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의 임명·자격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교원지위법」은 제17조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³⁾ 제20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청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교원은 교육감 의견제출 관련 업무 등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규정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등을 일원화된 경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에 대한 ‘보호·조사·지원’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원지위법」 제29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치유 지원 등을 위해 교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⁵⁾가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보호조사관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등을 파악함으로써, 피해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교원지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둘 경우, 2025년 8억 6,000만원, 2029년 16억 9,200만원 등 향후 5년간(2025~2029년) 총 74억 3,200만원(연평균 14억 8,6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안 제17조의2)	860	1,595	1,626	1,659	1,692	7,432	1,486

주: 1. ‘교권보호관’이 이미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권보호관’과 유사한 직급 및 연봉의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값임

2. 2025년도는 6개월분에 대한 계산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필요

-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아동학대 신고 사안 조사는 교육정책 방향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정통한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의 전문성 및 자격 등과 관련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 또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과 유사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 초기이므로 해당 제도의 운영 추이 및 현장 만족도, 활용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 명칭 사용으로 업무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육 활동 보호 전문가 등으로 용어 대체 고려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제17조의2제1항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용어) • 아동학대 신고에 무고성을 결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즉,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호가목은 형법상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제17조의2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시점에 무고성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여부를 해당 시점에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17조의2의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외부 인력인 조사관 활동 시 학교 및 교육청 인력이 개입하게 되므로 행정업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관 활동으로 인해 지원 및 조사의 신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 교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산광역시교육청 - 제17조의2의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위한 교원의 조사·지원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시도교육청(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해야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제17조2의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가칭)학교보안관 제도로 확장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업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생활지도 관련 업무, 등하교 지도, 분리학생지도 등 업무를 통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함.
○ 경기도교육청 - 제17조의2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력 관리를 위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업무 증가가 예상되며, 제도 운영 이전에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인력 확보가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17조의2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가 더 넓으므로 제19조의2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교육활동보호조사관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와의 업무 중복이 발생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9